

요약

대만은 역외금융보험 상품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2035년까지 10년간 연장하였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됨. 그러나 환율 변동성 확대와 해외자산 평가손실 우려 속에 일부 보험회사의 환위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환헤지 비율에 따른 차등 세제혜택 부여, 외환변동성준비금 적립 강화 등 조건부 인센티브 체계 도입이 고려되고 있음

- 대만 입법원은 2025년 7월 1일 「국제금융업무조례」 제22조의16 개정안을 통과시켜, 역외금융보험(Offshore Insurance Units; OIU) 제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함¹⁾
 -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역외금융보험에 적용 중이던 보험회사의 사업소득세, 영업세, 인지세 및 원천징수소득세에 대한 면세 조치의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 이는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자산관리 허브와의 경쟁 속에서 대만 보험회사의 세제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금융은행(OBU), 역외금융증권(OSU)과 연계된 국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임
- 대만의 역외금융보험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대만 내 보험회사 또는 대만 소재 외국계 보험회사가 외국인 및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외화표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²⁾
 - 허용되는 보험업무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국제 금융 관련 보험업무이며, 모든 거래는 외화로 이루어지고 대만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금지됨
 -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대만 내에 지점을 설치해야 하며, 대부분의 영업은 중개인 개입 없이 보험계약자가 온라인, 이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회사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보험계약자의 자발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세제 혜택, 장기 확정금리형 외화상품과 같은 고수익 상품, 자산관리 및 상속 증여 수단, 환차익 기대 등이 있음
 - 보험회사는 최소 200만 달러의 운영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별도 회계 처리,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정기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 2023년 말 기준, 역외금융보험 업무 인가를 받은 생명보험회사는 총 22개 사 중 15개 사이며, 역외금융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23% 감소한 1억 3,942만 대만달러를 기록함

1) FSC(2025. 7. 8.), "Legislative Yuan Approved the Amendment to Article 22-16 of the Offshore Banking Act"

2) Offshore Banking Act, Chapter 3-1 Insurance Enterprises

- 수입보험료는 2017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생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6%임

○ 최근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외화자산 비중이 높은 대만 생명보험회사들의 환위험 노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달러가 강세를 보일 경우 대규모 자본손실과 지급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2024년 기준, 대만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6.9조 대만달러이며, 운용자산의 70%가 해외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실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이라는 이중 리스크에 노출됨
- 생명보험회사들은 외화표시 보험상품 판매를 통한 자연헤지 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헤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헤지 비율을 축소하거나 달러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24년 외환거래 위험비율(Forex risk ratio)³⁾은 12~13%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차손 충격을 흡수하는 외환변동성준비금도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임⁴⁾
- 특히, 외화자산 대부분이 장기 저금리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에 환차손까지 더해질 경우 자본잠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조세감면 혜택 연장은 보험회사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에는 긍정적이거나, 현재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환위험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조건부 인센티브 체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⁵⁾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비중을 총 자산의 6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외화표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한도 적용이 제외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환헤지 비율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는 외환변동성준비금이 소진되었거나 부족한 상태이므로 적립 의무를 강화하고 통화 매칭 기반의 ALM 체계 정비를 통해 통화 불일치에 따른 재무 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외환변동성준비금은 순외환익스포저의 95% 범위 안에서 적립할 수 있으며, 매월 0.075~0.085%의 고정비율을 적립해야 하고,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60%를 추가로 적립해야 함⁶⁾
- 뿐만 아니라 환헤지 및 준비금 보유 요건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만 중앙은행은 차액결제선물환(NDF) 공급과 공공 헤지수단 마련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외환거래 위험비율은 보험회사의 총 자산 대비 헤지되지 않은 외환 위험에 보험회사의 외환변동성준비금을 반영한 비율을 뜻함

4) S&P(2024. 5. 16.), "2024 Taiwan Life Insurance Sector Credit Trends"

5) Financial times(2025. 5. 14.), "Taiwan's double, double toil and trouble"

6) 中華民國人壽保險商業同業公會, "人身保險業外匯價格變動準備金應注意事項"